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2. 1. 21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2. 1. 28

다. 의안번호 : 제 3 호

라. 상정일자 : 2002. 1. 29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아,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는 등 지방세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 (안 제 28조)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사망후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미이행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 승계순위를 규정(안 제37조제2항)

○ 농업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 (안 제51조제2항)

○ 신고한 농업소득 또는 신고하지 않은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 (안 제51조의2제1항)

2 (제86회-본회의 부록)

- 농업소득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결정(안 제51조의2제2항)
- 신고·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부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안 제51조의2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6월 1일로 일원화하여 건축물 매매로 인한 양도, 양수자간의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7월 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을 분산토록 하였으며,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 사실상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 순위 규정을 명문화하여, 과세의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상속자간의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5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6월 1일로 일원화하여 건축물 매매로 인한 양도, 양수자간의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7월 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을 분산토록 하였으며,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 사실상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의무 순위 규정을 명문화하여, 과세의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상속자간의 납세의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 농업소득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1월 31일까지 산출하기가 어려운 직 전년도의 농업소득액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신고기간을 늦추어 농업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토록 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확정·결정시한을 6월 30일까지로 명문화하고
- 과소 신고시의 부과, 징수방법과 과다 신고시 환부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리,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